

2026년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

-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 예산의 주권자인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운영에 대한 만족도 제고, 재정 운용의 건전성·민주성 증대 및 효율적 자원 배분 실현

I

운영개요

□ 운영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)
- 「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

□ 추진방향

-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 모든 군민이 접근 가능한 온·오프라인 참여 경로 제공
- 결과 공시 및 제안에 대한 숙의 강화로 이해충돌 방지 및 지속적인 사업 관리
- 주민이 예산 전 주기에 참여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읍·면 단위 자치계획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
- 평창군 주민세 재원(13억원)을 우선 활용하여 운영

□ 참여범위(군민)

-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
□ 2026년 주요 변경사항(2025 대비)

- (신규) 읍·면 자치계획형 주민제안사업 추진
 - 읍·면 자치계획과 연계한 공모·심사·예산편성 체계 구성
- (신규)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읍·면별 통합 4회 운영
 - 권역별 순회 교육으로 참여 장벽 완화, 제안의 질 제고

II

추진성과 및 개선과제

1 추진성과

□ 2026년('25년 추진) 주민참여예산 편성: 226백만원

구 분	제안사업명	예산액 (백만원)	소관부서
주민제안형 (3)	■ 문화복지센터 운영 - 센터 화장실 불법촬영 감시카드 설치	6	가족복지과
	■ 가로수 관리 - 대화면 가로수종 교체사업	200	산림과
	■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 -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(차선 도색)	20	경제과

※ 2025년 제안 6건, 반영 0건(반영률 0%) → 2026년 제안 32건, 반영 3건(반영률 10%)

□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

- 일시/장소: '25. 6. 19.(목) 14:00~17:00,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
- 교육이수: 주민참여예산위원, 기관단체장 및 공무원 등 45명
- 주요내용: 제도 강의 및 제안사업 발굴 토론, 제안서 작성 컨설팅
- 교육효과
 -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계기 마련
 - 퍼실리테이션 운영으로 제안 발굴 실습 및 지역에 필요한 사안 도출

□ 주민제안 주민참여 확대

- 추진일정: '25. 6. 23. ~ 7. 18.(4주간)
- 주민제안사업 공모 결과: 32건, 11,428백만원 *전년도: 6건
(단위 : 건, 천원)

구 분	제안건수	요구예산	예산반영(안)	비고
총 계	32	11,428,200	226,000	
추진	3	226,000	226,000	수정보완추진 1
통폐합	3	351,000	-	
부적합	26	10,851,200	-	

▶ 문화, 복지, 관광 분야 등 전년도 대비 다양한 주민 의견 표출

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

○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

- 심의안건: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3건, 226,000천원
- 심의일정: '25. 8. 19.(화), 서면(위원 14명 중 13명 심의)
- 심의내용: 주민제안사업 평가, 채택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

○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구성

*임기: '25.8.21. ~ '27.8.20.

- 구 성: 14명(당연직 3명, 위촉직 11명)
- 모 집: 신규 위촉직 3명(연임 제외), 공개모집
- 역 할: 3억원 이하 자체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검토, 보완 작성, 군민제안사업 적합 여부 결정 및 예산편성안 의견 제출 등

□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활성화

○ 온·오프라인 다양한 홍보채널 운영으로 제도 접근성 향상

- 보도자료, 홈페이지, 포스터, 현수막, 읍면별 밴드, SNS 등

2 개선과제

○ 제안 사업에 대한 낮은 예산 반영률

- 군민제안사업 접수 건수에 비해, 반영률 저조한 실정

▶미반영 주요 사유: 상위법 위반, 사업비 한도(3억원) 초과, 국비 사업, 당해 연도 완료 불가 등

○ 주민들의 낮은 참여도 및 관심도 부족

-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부족
- 행정절차, 관련 법규 등이 생소하여 제안서 작성의 어려움

○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지역 현안 및 수요 대응의 한계

➔ 【개선방안】

- ① 반영 사례 및 참여 방법 등을 교육, 홍보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군민의 자발적 참여 환경 조성 및 반영률 제고
- ② 불채택 사유 및 보완 사항 등을 제안자에게 안내하여, 제도 참여의 효능감을 높이고 재도전 기회 부여

1 사업 제안 및 선정

□ 공모형 주민제안 사업

○ 공모기간: (정기) 7월 ~ 8월 / (수시*) 연중 상시

* '수시모집' 제안 사업은 예산 편성 절차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28년 예산으로 검토

○ 공모방법: 평창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
○ 참여방법: 군 홈페이지, 주민e참여 홈페이지(행안부 온라인 플랫폼),
우편, 읍·면사무소 방문

○ 대상사업: 사업당 총 사업비 3억 원 이하 군 자치사무 전반

【 부적합 사업 】

- 총 사업비 3억 원 초과 사업과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
-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, 기 추진중인 사업, 국비보조사업
-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
- 시설 및 사회단체 등의 인건비 및 경상적(보조)경비
- 군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

○ 세부추진일정

사업제안 (7월 ~ 8월)	■ 신청 : 군민 제안 ■ 방법 : 홈페이지, 방문, 서면 등 ■ 기간 : 연중 접수, 집중신청기간(7월~8월)
↓	↓
소관부서 검토 (8월 ~ 9월)	■ 대상 : 제안사업 ■ 검토 : 해당부서에서 법령위반, 중복, 사업타당성 등 ■ 선정 : 부적격사업을 제외한 사업
↓	↓
현장 조사 (8월 ~ 9월)	■ 대상 : 소관부서 채택사업 ■ 검토 : 해당부서에서 사업효과성, 민원발생 가능성 등 ■ 결과 :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
↓	↓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(9월)	■ 대상 : 소관부서 채택사업 ■ 검토 :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■ 기준 : 필요성, 시급성, 공공성 등 검토 ■ 확정 : 익년도 예산편성 반영 최종 의견 제시
↓	↓
예산안 반영 (10월 ~)	■ 예산부서 : '27년도 당초예산안 반영 최종 결정 및 의회 제출

□ 읍면 자치계획형 사업(신규)

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여 검토, 현장확인,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스스로 마을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
- 운영방식: 읍면별 대표 자치 협의체*에서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 채택

* 주민자치회, 번영회, 이장협의회 등 읍면별로 자율적 구성

- 사업규모: 지역별 총액한도제

구분	계	평창읍	미탄면	방림면	대화면	봉평면	용평면	진부면	대관령면
총액(천만원)	49	8	5	5	6	6	5	8	6
인구수(명)	39,933	8,279	1,458	2,486	4,927	5,550	2,963	8,459	5,811
인구비율(%)	100	21	4	6	12	14	7	21	15

- 공모기간: (정기) 7월 ~ 8월 / (수시*) 연중 상시

* '수시모집' 제안 사업은 예산 편성 절차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28년 예산으로 검토

- 채택범위: 주민생활 밀접형 읍면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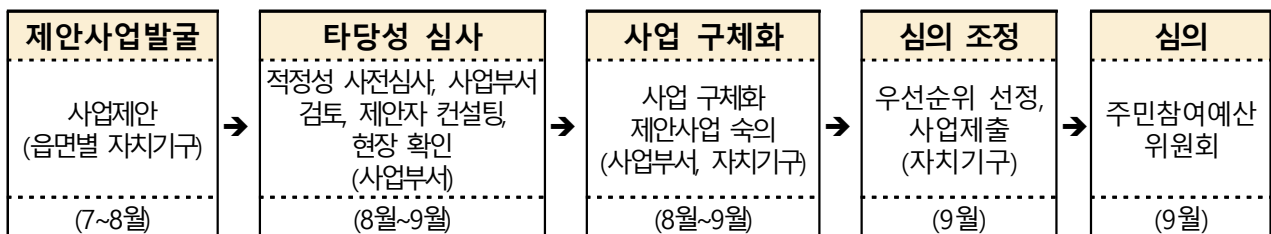
- 사업한도: 1개 사업당 22백만원 이내

【 부적합 사업 】

- 법령 위반, 지원근거 미비,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
-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, 기 추진중인 사업, 국비보조사업
-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
- 시설 및 사회단체 등의 인건비 및 경상적(보조)경비
- 군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

- 운영사항: 사업 선정 후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안사업(우선 순위 선정) 제출(9월 초까지)

- 운영절차



※ 타당성 심사 단계에서는 군 관련부서의 검토가 필요

※ 최종 선정된 예산안은 예산부서 심의 및 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2 사업외 군민 제안

□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

- 기간 및 대상: '26. 7. ~ 8. / 군민 누구나 가능
- 참여방법: 인터넷(군 홈페이지), 읍·면 서면 조사
- 설문내용: 2027년도 재정운영방향, 분야별 중점투자사업 등
- 활용계획: 설문내용 분석 및 2027년 예산편성 기초자료 활용

□ 예산집행과정 주민참여(상시)

- 홈페이지에 「예산낭비 신고센터」 운영
 - 신고 내용에 대해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개선 조치
 - 예산집행상 낭비적 요인에 대한 주민감시기능 제공과 재정의 투명성·효율성 확보를 통한 예산낭비 억제, 예산집행의 적정성 도모

3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**[신규]**

- 목 적: 주민제안사업 공모 확대 및 군민참여 기반 확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의견수렴 기회 제공
- 대 상: 지역주민, 주민참여예산위원, 공무원, 관심있는 군민 등 누구나
- 기 간: '26. 6. ~ 7.(예정)
- 장 소: 읍면사무소 등(권역별 순회 운영)
- 사업비: 10백만원(군비)
- 운영규모: 1회당 10~20명 / 4회
- 운영방법: 전문가 위탁교육
- 교육내용
 - 개념 이해, 재정운영 현황, 사업제안 방법, 제안 가능, 채택 사례
 - 지역 현안문제 발굴, 주민 제안서 작성 실습 등

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

- 인 원: 14명(당연직 3명, 위촉직 11명) ※ 20명 이내
- 임 기: 2년('25. 8. 21. ~ '27. 8. 20. / 1회 연임가능)
- 역 할
 - 군민 제안 사업 적합 여부 결정 및 예산편성안 의견 제출
 -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검토, 보완 작성
 -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 발전방안 토의 등

5 주민참여예산 홍보 강화

➔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제안사업 공모,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 단계별로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체계 구축으로 참여 환경 조성

□ 온/오프라인 매체 활용

- 홈페이지 활용 및 SNS 홍보
 - 군청 홈페이지 내 팝업창, 설문조사 링크 등
 - 유튜브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읍면별 밴드 등 다양한 매체 활용
- 소식지 및 각종 배포자료 수록
 - 평창이야기, 이장회의 자료 등
- 리플릿 및 홍보전단지 제작·배포
 - 읍면사무소 민원실, 기타 공공기관 등

□ 단계별 적시 홍보

- 주민 제안 집중접수, 예산 편성 관련, 예산학교 모집 등 단계별 적시 홍보

□ 협조체계 구축

- 읍·면사무소 및 사업부서(청소년위원회 등)와 연계하여 교육, 홍보, 공모 제안 등 협조 요청

6 주민참여예산 환류

□ 주민참여예산 공개관리 확대

- 주민제안사업 채택 결과 및 예산 반영 내역, 설문조사 결과 등을 실시간 공개하여 제도의 책임성 및 민주성 강화

□ 재정공시제도 운영(2회)

- 시 기: 연 2회 (2월, 8월)
- 방 법: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후 군 홈페이지 게시
- 내 용: 당해연도 예산현황(2월) 및 전년도 재정운용 결과(8월)에 대해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
 - 예산현황 및 예산운용 결과: 살림규모, 재정여건, 채무현황, 재정 분석 결과, 감사결과 등
 - 주민관심사항: 업무추진비, 행사·축제경비,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현황
 - 각종 예산관련 지표 및 군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등

IV 2026년 추진일정

월별	추진업무
3월	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
6월	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집중 홍보
7월	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, 주민 설문조사
8월	지역별 의견수렴, 제안사업 현장조사, 지역별 제안사업 선정 부서별 사업적정성 검토
9월	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(주민참여예산안 채택심사)
10월	부서별 예산편성(안) 요구 및 주민의견서 작성
11월	2027년 주민참여예산 편성(안) 의회 제출
12월	군의회 예산안 심의의결 및 확정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 공고

- (전부서) 주민참여예산 운영 적극 협조
 - 주민제안사업 검토시 제안자 의견 청취, 컨설팅 등 사업계획서 수정·보완·연계하여 예산 반영 적극 채택·추진
 - 주민제안사업 채택 결과 안내
- (읍·면) 읍면 자치계획형 주민제안사업 운영
 - 읍면별 대표 자치 기구 운영 및 사업부서 적정성 검토 협조
 - 사업 선정 후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안사업(우선순위 선정) 제출(9월 초까지)
- (기획예산과) 군 홈페이지(팝업광고, 설문조사 링크 등), 소식지(평창이야기) 등을 활용한 홍보

붙임 1

제안서 서식

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 제안서

☐ 제안자 (주민참여예산위원 해당 여부 ☐)

성명		연락처	
주소			
개인정보 취급	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 ☐ 동의		

☐ 제안내용

구분(택1)	☐ 일반공모형	☐ 읍·면 자치계획형
사업명		
사업위치	평창군 전역 또는 00읍면	
사업대상 (수혜자)		
소요사업비	천원(추정) / 사업기간 : 2027년도	
※세부산출내역	00장비구입: 00 읍면×1,000천 원(단가)×2개 = 총사업비4,000천 원	
사업목적 (제안취지)		
사업내용	〈 제안 부적합 사업 〉 - 총사업비 초과 사업 - 당해년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-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 - 기추진중인 사업, 국비 보조사업 -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- 시설 및 사회단체 등의 인건비 및 경상적(보조)경비 - 군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※ 사업대상(수혜자), 사업량,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(산출내역)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(필요시 세부계획 등 별도 첨부 가능)	
20 년 월 일		
평창군수 귀하		

※ 접수방법 : ① 방문 ② 우편 : (25374)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, 기획예산과 예산팀

사 업 위 치 도

※ 필요 시 작성

현 황 사 진

※ 필요 시 작성

□ 『지방재정법』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"주민참여예산제도"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(이하 "주민참여예산기구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『지방재정법 시행령』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)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이하 이 조에서 "예산과정"이라 한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청회 또는 간담회 / 2. 설문조사 / 3. 사업공모 / 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(이하 이 조에서 "주민참여예산제도"라 한다)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

1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
2.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
3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참고

주민제안사업 요건 심사 체크리스트

구분	검 토 사 항	체 크	
		Y	N
요 건 심 사 항 목	① 총사업비 한도 초과 사업		
	②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 위반 사업(관련 법령 확인)		
	③ 중장기 검토 과제 - 중기지방계획, 타당성 조사, 지방재정영향평가, 재정투자 심사제도 등 사전절차이행 필요 사업 - (예시: 다목적체육관, 수영장, 문화센터, 도서관, 주민센터 등 건립)		
	④ 국도비 매칭사업		
	⑤ 계속비 사업 -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공사나 제조, 그 밖의 사 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		
	⑥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·중복 사업 - 동일 지역 내 동일 사업 불가 - 이미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		
	⑦ 행정 내부 운영 예산(공공청사 기능 보강 등)		
	⑧ 인건비, 법적경비, 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		
	⑨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난 자산 취득성 사업		
	⑩ 사유지 내의 사업 (불가피한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사전 동의 필수 및 향 후 토지나 건물 등의 관리주체, 관리방안 제출)		
	⑪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제안된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		
	⑫ 일반 민원성 제안, 찬반 대립이 존재하는 제안 (예시: 주정차 단속, 불법행위 단속, 환경정비 등)		
	⑬ 타 기관(경찰서, 교육청, 소방서, 한국전력공사 등)에서 이행 하여야 하는 사업		
	⑭ 전체적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편의를 고려한 사업		